

# ◆ 변경회생계획안(2차 수정안) 요지 ◆

(채무자: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)

## 1. 용어의 정의

이 계획안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

- 1) “원회생계획”이란 채무자회사가 2017년 1월 13일 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을 말함
- 2) “변경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” 본 변경회생계획안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 변경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일의 전날을 말함
- 3) “확정채권액”이란 원회생계획이 정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여야 할 채권액에 변경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까지의 변동 내역을 반영한 후, 원회생계획이 정한 조기변제 할인율(3.41%)로 변경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을 기준시점으로 현재가치할인한 금액을 말함. 단, 원회생계획상 제1차년도(2017년)에 변제하였어야 하지만 변제되지 아니한 현금변제액은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인함

## 2.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

### 가. 회생담보권(대여금채권)

#### ■ 한국산업은행

##### 1) 원금 및 개시전 이자

- 한국산업은행의 확정채권액 중 대구공장과 관련된 64,000,000,000원은 대구광역시, 대구도시공사 등 국가기관에 의한 매각제한이 해소되는 시점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별 우선순위 따라 변제
- 상기의 대구공장과 관련된 채권을 제외한 한국산업은행의 확정채권액에 대해 M&A인수대금으로 확정채권액의 73.93780353%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. 단, 창원 3공장과 관련된 39,143,000,000원, 대구

광역시 소재 아파트와 관련된 869,336,584원은 해당 자산의 매각이 완료된 후 변제

- 상기와 같은 변제되는 채권을 제외한 확정채권액의 26.06219647%는 출자전환

2) 변경인가 전·후 개시후 이자

- 변경인가 전·후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

■ 농협은행

1) 원금 및 개시전 이자

- 농협은행의 확정채권액 중 수정만과 관련된 27,000,000,000원은 해당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제3의 신탁사와 별도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는 우선수익권을 양도하여 변제
- 위 금원을 제외한 농협은행의 확정채권액에 대해서는 M&A 인수대금으로 확정채권액의 46.58554757%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
- 상기와 같은 변제되는 채권을 제외한 확정채권액의 53.41445243%는 출자전환

2) 변경인가 전·후 개시후 이자

- 변경인가 전·후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

■ 한국수출입은행

1) 원금 및 개시전 이자

- 한국수출입은행의 확정채권액의 49.80549314%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고, 50.19450686%는 출자전환

2) 변경인가 전·후 개시후 이자

- 변경인가 전·후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

■ 경남은행

1) 원금 및 개시전 이자

- 경남은행의 확정채권액의 85.74978433%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고, 14.25021567%는 출자전환

2) 변경인가 전·후 개시후 이자

- 변경인가 전·후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

#### 나. 회생담보권(구상채권)

##### 1) 원금 및 개시전 이자

- ㉠ 원회생계획상 출자전환의 대상이 되는 채권 중 출자전환되지 아니한 부분
  -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8%를 출자전환 및 10:1 병합

##### ㉡ 원회생계획상 현금변제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분

- 확정채권액 중 원회생계획에 따라 제1차년도(2017년)에 현금변제해야 할 금액 중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현금 변제
- 확정채권액 중 위 금원을 제외한 잔액의 27.55772247%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72.44227753%를 출자전환

##### 2) 변경인가 전·후 개시후 이자

- 변경인가 전·후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

#### 다. 회생담보권(미발생구상채권)

##### 1) 원금 및 개시전 이자

##### ㉠ 원회생계획상 출자전환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분

-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변제책임이 확정된 날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최초영업일에 88%를 출자전환 및 10:1 병합

##### ㉡ 원회생계획상 현금변제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분

-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2% 중 원회생계획상 제1차년도(2017년) 현금변제분은 전액을, 나머지는 변제책임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조기변제할인율(연 3.41%)로 할인 후 그 금액의 27.55772247%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72.44227753%를 출자전환

##### 2) 변경인가 전·후 개시후 이자

- 변경인가 전·후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

### 3.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

#### 가. 회생채권(대여금채권)

##### 1) 원금 및 개시전 이자

- 확정채권액 중 원회생계획에 따라 제1차년도(2017년)에 현금변제해야 할 금액 중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현금 변제
- 확정채권액 중 위 금원을 제외한 잔액의 27.55772247%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72.44227753%를 출자전환

##### 2) 변경인가 전·후 개시후 이자

- 변경인가 전·후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

#### 나. 회생채권(구상채권)

##### 1) 원금 및 개시전 이자

- ㉠ 원회생계획상 출자전환의 대상이 되는 채권 중 출자전환되지 아니한 부분
  -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8%를 출자전환 및 10:1 병합
- ㉡ 원회생계획상 현금변제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분
  - 확정채권액 중 원회생계획에 따라 제1차년도(2017년)에 현금변제해야 할 금액 중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현금 변제
  - 확정채권액 중 위 금원을 제외한 잔액의 27.55772247%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72.44227753%를 출자전환

##### 2) 변경인가 전·후 개시후 이자

- 변경인가 전·후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

#### 다. 회생채권(미발생구상채권)

##### 1) 원금 및 개시전 이자

- ㉠ 원회생계획상 출자전환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분
    -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변제책임이 확정된 날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최초영업일에 88%를 출자전환 및 10:1 병합
  - ㉡ 원회생계획상 현금변제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분
    -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2% 중 원회생계획상 제1차년도(2017년) 현금변제분은 전액을, 나머지는 변제책임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조기변제할인율(연 3.41%)로 할인 후 그 금액의 27.55772247%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72.44227753%를 출자전환
- 2) 변경인가 전·후 개시후 이자
- 변경인가 전·후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

#### 라. 회생채권(상거래채권, 소액상거래채권)

- 1) 원금 및 개시전 이자
- 확정채권액 중 원회생계획에 따라 제1차년도(2017년)에 현금변제해야 할 금액 중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현금 변제
  - 확정채권액 중 위 금원을 제외한 잔액의 27.55772247%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72.44227753%를 출자전환
- 2) 변경인가 전·후 개시후 이자
- 변경인가 전·후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

#### 마. 회생채권(미확정상거래채권)

- 1) 원금 및 개시전 이자
- ㉠ 원회생계획상 출자전환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분
    -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변제책임이 확정된 날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최초영업일에 86%를 출자전환 및 10:1 병합

㉔ 원회생계획상 현금변제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분

-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4% 중 원회생계획상 제1차년도(2017년) 현금변제분은 전액을, 나머지는 변제책임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조기변제할인율(연 3.41%)로 할인 후 그 금액의 27.55772247%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72.44227753%를 출자전환

바. 회생채권(특수관계인채권)

1) 원금 및 개시전 이자

- 확정채권액의 27.55772247%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72.44227753%를 출자전환

2) 변경인가 전·후 개시후 이자

- 변경인가 전·후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

4. 조세 등 채권

- 원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 등으로 소멸되어 변동된 후 잔액 전액(원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증가산금 포함)을 현금으로 변제

5.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

가.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

1) 원회생계획상 출자전환이 확정되었으나 미발행된 주식

- ㉔ 원회생계획에 따른 기존 출자전환 대상 채권자 중 신주발행 관련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변경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 현재 미발행된 주식은 원회생계획 제 10장 제5절 취지에 따라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의 다음 영업일에 액면가 2,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2,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주로 병합

㉞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: 신주발행을 위한 관련자료 확보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최초영업일

2) 회생담보권, 회생채권

㉟ 회생담보권,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출자전환 채권액 2,500원을 액면가 2,500원의 보통주 1주로 발행

㊱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: 변경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11영업일

**나. 조사확정재판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회생채권**

1)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, 기타 소송 등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, 각 채권의 원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안의 각 권리 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출자전환 및 병합, 무상소각

2) 효력발생일: 출자전환되는 주식은 채권확정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최초 영업일

**다. 출자전환 후 주식 재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**

1)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병합된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2,500원의 보통주 각 8주를 액면가 2,5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재병합

2) 효력발생일 :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영업일

**라.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**

1) 채무자회사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자금 조달을 위해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인수자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액면가 2,500원으로 19,540,000주의 신주를 발행

- 2)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 : 주식재병합 효력발생일의 다음 영업일
- 3) 효력발생일 :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의 다음 영업일
- 4) 처분제한 :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유상증자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식의 100%인 19,540,000주를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

#### 마. 주식재병합 및 출자전환에 따른 단주 처리

- 1) 주식 재병합 및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

### 6. 회사채의 발행

- 1) 채무자회사는 회생채권의 변제자금 조달을 위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49,870,000,000원의 회사채 발행
- 2) 발행 조건
  - 사채종류: 무보증 사모일반회사채
  - 사채의 권면액 및 장수: 49,870,000,000원 1매
  - 사채의 이율: 연 6.0%
  - 사채 인수대금 납입기일 및 사채의 발행일: 인수자에 대한 유상증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

### 7. 자산의 신탁

#### 가. 신탁의 목적

- 1) 엔진기자재사업부 및 플랜트사업부 M&A 인수대상자산이 아니면서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비영업용자산인 수정만 부지 등에 대하여 제3의 신탁사와 별도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는 수익권을 회생담보권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회생담보권을 변제
- 2) 변경회생계획 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창원3공장 및 대구공장아파트의 인수계약



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, 창원3공장 및 대구공장아파트는 변경회생계획안 제9장의 신탁 및 회생담보권의 변제방법에 따라 처리

#### 나. 신탁의 방법

- 1) 채무자회사(위탁자)는 변경회생계획안이 인가되는 즉시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사(수탁자)와 신탁대상자산에 대해 신탁계약을 체결
- 2) 신탁자산 중 수정만부지에 대해서는 신탁에 따라 취득하는 수익권을 농협은행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해당 회생담보권을 변제
- 3) 수정만부지 등 신탁대상 자산 중 해당 자산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이 있는 자산의 경우, 신탁사가 수익자의 요구에 따라 신탁자산을 매각하여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
- 4) 신탁자산 중 해당 자산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이 없는 기타자산의 경우, 신탁자산을 매각한 처분대금은 미확정채권 현실화 예상액을 예치해 둔 에스크로우 계좌에 예치
- 5) 엔진, 플랜트사업부 M&A 인수대상자산이 아닌 비영업용자산 중 신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영업용자산의 처분대금은 관련 회생담보권자에게 즉시 변제
- 6) 상기 자산들의 신탁계약 체결, 유지, 처분 등을 위한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변제재원에서 2,400,000,000원을 신탁에스크로우 계좌에 예치
- 7) 신탁계약 종료 후, 신탁에스크로우 계좌에 잔존금액이 존재하는 경우, 해당 금액은 신탁계약 후 수익권증서를 양수받은 채권자의 소멸되는 회생담보권 금액에 비례하여 즉시 변제

#### 다. 신탁대상자산

- 1) 담보자산(수정만부지) : 장부가액 66,643,277,523원
- 2) 기타자산(STX문경 리조트회원권 등) : 장부가액 3,821,889,344원

라. 신탁자산으로 피담보되는 회생담보권

- 1) 농협은행 :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확정채권액 27,000,000,000원

마. 신탁자산으로 피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의 변제방법

- 1) 변제 방법

신탁대상 자산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채권액은 채무자회사가 해당 자산의 신탁에 따라 취득한 수익권을 회생담보권자에게 양도하여 변제

- 2) 변제의 효력발생 시기

위 '1) 변제 방법' 항의 회생담보권은 수익권증서를 회생담보권자에게 양도하는 때에 그 확정채권액에 대한 확정적인 변제의 효력이 발생

끝.